2025/26

선박안전관리사 등
국제선박항만보안법

엠북 해사법규

공부혁명!
mbook.kr

- 스마트폰 수험총서
- 50분 완성
-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- 법, 시행령/시행규칙(일부) 종합

도서명 : 국제선박항만보안법

ISBN : 979-11-7393-075-1

발간일 : 2025-09-08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https://www.mbook.kr/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5,500원

국제선박항만보안법

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5)
제2장 국제항해선박 보안확보 조치(p16)
제3장 항만시설 보안확보 조치(p41)
제4장 보칙(p67)
제5장 벌칙(p83~90)

[약어]

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
국가등은 국가, 지자체

해수부는 해양수산부

장관은 해수부장관

부령은 해수부령

한국은 대한민국

보안증서는 국제선박보안증서

임시보안증서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

증서등은 국제선박보안증서등 (보안증서, 임시보안증서)

소유등은 소유하거나 관리/운영

적합확인서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

임시확인서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~6조

1. 목적

- 국제항해 이용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 보안 정함
- 국제항해 관련 보안상 위협 효과적 방지
- 국민 생명/재산 보호에 이바지

2. 정의

가. 국제항해선박

-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

나. 항만시설

-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게 갖춘 시설

1) 항만시설

2)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

- 선박을 수리/건조하는 조선소 선박계류시설
- 석유 비축기지,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,

화력발전소 선박계류시설

- 장관 허가 받아 외국 국적선박이 기항하는 불개항장 선박계류시설

다. 선박항만연계활동

-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간 승선/하선, 선적/하역 등 사람, 물건 이동 수반 상호작용
- 그 활동 결과 국제항해선박이 직접 영향 받음

라. 선박상호활동

- 국제항해선박 간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밖의 선박 간 승선/하선, 선적/하역 등 사람, 물건 이동 수반 상호작용

마. 보안사건

- 국제항해선박, 항만시설 손괴 또는 국제항해선박, 항만시설에 위법하게 폭발물, 무기류 반입/은닉 등 국제항해선박, 항만시설, 선박항만연계활동, 선박상호활동의 보안 위협 행위나 그 행위와 관련된 상황

바. 보안등급

- 보안사건 발생 위험 정도를 단계적으로 표시
- '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'(이하 협약)에 따른 등급구분 방식 반영

사.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국제항해선박의,
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의,
- 소유자/관리자, 소유자/관리자로부터 운영 위탁받은 법인/단체, 개인

아. 국가보안기관
- 국가정보원, 국방부, 관세청, 경찰청, 해양경찰청 등 보안업무 수행 국가기관

3. 법 적용범위

가. 적용: 법에 특별한 규정 있으면 그 규정 따름

1) 다음 한국 국적 국제항해선박

- 모든 여객선

-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

- 이동식 해상구조물(천연가스 등 해저자원 탐사/발굴, 채취 등에 사용)

2) 상기 한국 또는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

나. 적용 제외

-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등 소유 국제항해선박

4. 국제협약과의 관계

- 국제항해선박, 항만시설 보안에 관해